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- 19호

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6일

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현행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‘특별한 사정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와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및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예고기간 관련 조항 수정(안 제7조 제2항 삭제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

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